

#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성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5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  
발 의 자: 문성호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고광민, 김경훈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 
김혜영, 남궁역, 민병주,  
신복자, 이상욱, 정지웅,  
최민규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내 새로운 교통수단이자 한강을 활용한 훌륭한 관광 및 여가 활동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한강버스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
- 특히 관리와 점검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확실한 관리주체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선원 및 운항 종사자가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실시 의무 규정함(안 제7조 제2항)
- 나. 선박의 청결 및 위상 상태와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근거함(안 제7조제3항)
- 다. 선박을 책임지는 선장의 승객 보호 의무 및 사고 대응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제6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가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, 자체적으로 선박 및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사업자는 선박 내·외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, 선박의 연료 탱크 및 배터리 상태 등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, 안전시설을 관리·감독할 의무가 있다. 시장은 사업자를 감독하거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한강버스 선장은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,

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보고하고 구조조치를 취해야  
한다.

#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새로운 교통수단인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와 점검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확실한 관리주체가 정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
-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감독 및 정기점검은 소관 부서<sup>1)</sup>의 통상적인 행정 지도·감독 사무에 해당하며 분기별 1회(한강버스 특별점검) 선박검사 전문기관(KOMSA), 한강안전전문위원, 수상구조물 및 선박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외의 동행으로 전문성을 제고<sup>2)</sup>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, 안 제7조제2항과 제6항은 한강버스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안전 관련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안전과 유선 확인

2) 2026년 해빙기 대비 유·도선 안전점검 계획[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: 250천원 \* 4명 \* 5일 = 5,000천원]